

FY2005 보험정책 세미나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2005. 9. 27

보 험 개 발 원

< 목 차 >

I. 예금보험제도의 검토 필요성	1
II.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역할과 특성	2
III.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	5
IV.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12
V.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19
참고 문헌	28

1. 예금보험제도의 검토 필요성

□ 보험권에서는 수년간 **예금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의 통합 이후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물론이고 보험권의 경우에는 산출기준도 상향 조정됨으로써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 이에 산출기준 조정이나 요율 인하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금융권간 형평성, 기금 부족 우려 등 현실적 장애에 부딪혀 진전이 없음.

□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통합예금보험기금의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고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음

-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기금은 한시적 전액보장을 부분보장제로 환원하였고, 구조조정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기금으로부터 분리하였으며, 최근에는 목표기금제와 보험료차등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그동안 보험권에서 제기하여 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보험권의 제도개선 모색에 있어서도 은행권과 대비되는 보험권의 특수성을 강조하게 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예금자보호제도의 틀 안에서는 보험상품과 보험권의 보편적 특성보다는 저축상품이나 은행권과 상이한 보험권의 특수성만 부각될 수밖에 없음.
-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특성과 기본 틀을 모색하고, 세계보험시장의 보호기금의 운영 실태를 통하여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II.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역할과 특성

1. 보험사 지급불능과 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의 보장(security)이기에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는 보험사의 신뢰 유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에 따른 보험권의 감독규제도 금융권 중 가장 보수적임
 - 따라서 법령 등을 통하여 누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인수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업 지속 요건을 정하여 보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반적 특징임.
 - 다른 한편으로 보험시장은 보험사가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경쟁시장으로 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¹⁾.
- 보험권에서는 파산절차 안에서의 법령상 보험계약자 보호가 파산절차 밖의 기금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보다 보편적임²⁾
 - 법령상 보호제도인 우선변제제도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에게 근로자, 조세당국 등과 동일한 채권자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은행권에서는 드물게 관찰되지만³⁾, 보험권에서는 보편적 보호제도임.
 -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호기금 설치를 통한 파산절차 밖에서의 보호가 일반적인 은행권과는 반대로 보험권에서는 기금 설치가 아직까지 많지 않으나, 점차 기금을 설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음.

1) 정운찬(1999).

2) Yasui(2001).

3) Garcia는 은행권 예금보험제도의 형태를 크게 6가지로 나누고, 그 중 예금자 우선변제제도(legal priority for the claims over other claimants)가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드문 예임을 지적하고 있음. Garcia(2001).

2. 보호기금의 다양한 역할과 보완 수단

- 일반적으로 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 지급불능 파급효과 차단, (2) 최후의 안전망, (3)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연스런 퇴출장치 제공, (4) 겸업화에 따른 금융권간 공정경쟁 유지라는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음⁴⁾
 - 특히, 인출쇄도(bank run)에 따른 지급불능 파급효과(contagion effect)의 차단을 은행권에서는 보호기금 설치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보고 있음.
 - 이는 은행권의 예금자가 애초에 약속된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미래 이자를 포기하는 것만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므로, 한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시스템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임.
 - 또한, 보호기금은 금융소비자에게 최후의 안전망이며, 신속한 부실처리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⁵⁾ 경향을 억제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 그러나 이러한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역할들은 금융권의 특성에 따라 그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보호기금에서도 도덕적 해이, 역선택, 대리인 문제 등의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의 존재에 대한 부정보다는 기금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 운영의 모색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손실을 금융소비자와 분담하는 부분보장제도,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식별과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 등은 기금의 역기능을 줄이려는 대표적 보완수단들임.

4) Yasui(2001)

5)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처리 지연은 대표적 규제유예이며, 이 때문에 흔히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언급되기도 함. 실제로 대마불사는 한 동안 미국에서 암묵적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한계 또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전홍택·안영석(2001), 송홍선(2004).

3. 기금의 보험계약자 보호 역할 우선

- 기금의 필요성과 역할의 경중이 다르면 기금의 설계와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는 보험권과 은행권의 기금에도 해당됨
- 보험계약자는 길게는 수십 년간의 계약유지 이후에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거나 아예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에게 상당한 원금 손실과 보장 상실을 초래하기에 해지쇄도(insurance run)로 인해 연쇄적인 지급불능을 초래할 가능성은 은행권의 인출쇄도와 비교하여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오히려 보험사 파산의 영향은 즉각 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리스크 증가로, 다시 정부의 리스크 증가로 옮겨가는 보이지 않는 터널효과가 존재함.
- 이와 같은 터널효과 때문에 보험권의 보호기금은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차단보다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함**⁶⁾
- 결과적으로 보험권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법령상 보호와 기금을 통한 보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기금을 통한 파산 처리에서도 계약 이전이나 인수합병에 의한 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보편적 정리방식임.

6)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에 대한 보험’이라 한다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보험에 대한 보증’으로 구분될 수 있음. 김형원 등(2005).

Ⅲ.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

1. 보험권 보호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반 원칙

□ 최근 EU는 25개 회원국들에게 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할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일련의 원칙을 제시함⁷⁾

- (1) 모든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보호기금을 보유해야 하고, 보험사는 동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 회원국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기금을 설치할 경우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상호보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함.
- 또한, EU는 (3) 보호받을 대상자를 비전문적 보험계약자로 한정하고, (4) 보험계약의 연속성 유지와 (5) 부분보장 등의 원칙을 제시함.

□ EU는 모든 계약자들이 동일한 보장 수준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보호 대상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호기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소비자 또는 소규모기업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제3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⁸⁾으로 정의하고 있음.
- EU는 보호 대상을 보험계약자 외에 보험수익자, 제3의 피해자로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비전문적 보험소비자의 범주로 한정하고 있으며⁹⁾, 이 범주에는 소규모 기업도 포함됨.

7) 본문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의 2004년 10월과 2005년 1월의 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

8) 이 경우 보험금은 원수보험에 관한 지침(2002/83/EC의 제2조)에서 정한 보험계약과 그 운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채무의 일부 요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 역시 포함된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음.

9) 소비자 개념(93/13/EC, 2001/31/EC)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93/13/EC, 2001/31/EC는 소비자를 자기 전문영역 또는 직업영역 이외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최근

2. 세계 각국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현황과 추세

가.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설치 현황

- 세계보험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OECD에서는 28개국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한 반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미국 등 9개국에 불과함

< 표 1 > OECD 회원국의 보험 및 은행 기금 보유 현황

OECD 회원국		은행권 기금	보험권 기금	기금의 형태	비EU 국가
1	호주	-	-		√
2	오스트리아	●	-		
3	벨기에	●	-		
4	캐나다	●	◎	생명/손해	√
5	체코	●	-		
6	덴마크	●	-		
7	핀란드	●	-		
8	프랑스	●	○	생명	
9	독일	●	-		
10	그리스	●	-		
11	헝가리	●	-		
12	아일랜드	●	-		√
13	아일랜드	●	○	손해	
14	이태리	●	-		
15	일본	●	◎	생명/손해	√
16	한국	●	◎	생명/손해 (통합)	√
17	룩셈부르크	●	-		
18	멕시코	●	-		√
19	네덜란드	●	-		
20	뉴질랜드	-	-		√
21	노르웨이	●	○	손해/신용보험	√
22	폴란드	●	○	생명	
23	포르투갈	●	-		
24	슬로바키아	●	-		
25	스페인	●	-		
26	스웨덴	●	-		
27	스위스	●	-		√
28	터키	●	-		
29	영국	●	◎	생명/손해 (통합)	
30	미국	●	◎	생명/손해	√

주: 2001년 기준

자료: Garcia(1999, 2001), Yasui(2001), Swiss Re(2005).

일본의 보험보증기금 개정안에서도 반영되고 있음. 일본 금융청(2005).

- 현재 대다수 보험종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반기금¹⁰⁾ 형태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OECD 9개 회원국은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기금을 모두 보유한 나라는 5개국으로 그 중 **한국과 영국이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손해보험기금만을, 프랑스와 폴란드는 생명보험기금만을 보유하고 있음.

< 그림 1 > OECD 회원국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보호기금



- 한편,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¹¹⁾, 이는 OECD 회원국 절대 다수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임.

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과 보상한도

- 보호기금은 전문적 평가능력이 없는 일반계약자와 소규모 기업들을 보호하며, 보험계약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 강조와 함께 사고에 따른 보험금 기준의 충분한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10) 물론 특정종목의 기금(special fund)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현재 EU 지침으로 의무화된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금이 대표적이나 이는 제한된 보장 범위의 특별기금으로 일반기금과 차이가 있음. 자동차배상책임 이외에도 사냥보험기금(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기금 (프랑스, 이태리, 일본, 포르투갈) 등의 특별기금이 있음. EU(2002, 2005).

11) 독일, 이태리는 강력한 보험계약자 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들이며, 이들 나라는 대다수 보험종목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금형 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호기금들은 보호대상 보험종목의 제한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형 기업들을 궁극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최고금액 한도(ceiling)내에서 보상하거나 청구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partial payment)하는데, 최근에는 두 유형의 혼합형이 늘고 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은 전액 보상함.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보호기금은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은행권 수준으로 맞추고, 보험금 기준은 높이는 이원적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겸업화 추세를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함.
- 보험금 기준으로는 300,000달러와 200,000캐나다달러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환급금 기준은 이보다 낮은 100,000달러와 60,000캐나다달러로 은행권의 보상한도와 동일함.

< 표 2 > OECD 회원국 보호기금의 보상 한도

국가		보호기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1	캐나다	생명 / 손해	CAD 200,000 ¹	CAD 250,000 ²
2	아일랜드	- / 손해	-	65%; IRL 650,000
3	프랑스	생명 / -	EUR 70,000	-
4	일본	생명 / 손해	90% ³	90% ³
5	한국	통합 기금	KRW 50M	KRW 50M ⁴
6	노르웨이	- / 손해, 신용	-	무제한 ⁵
7	폴란드	생명 / -	50%, EUR 30,000	-
8	영국	통합 기금	90% ⁶	90% ⁶
9	미국	생명 / 손해	USD 300,000 ⁷	USD 300,000

주: 1. 해약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과 동일하게 CAD 60,000.

2. 1사고당 기준.

3. 자동차, 지진보험은 100% 보장, 계약 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은 85~90% 보장.

4. 의무보험의 경우 5천만원 초과분은 손해보험협회의 보증기구에서 보상.

5. 한도제한 법률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음.

6. £2,000까지는 100% 초과분은 90% 보상; 단, 의무보험은 100% 보장.

7. 해약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과 동일한 USD 100,000. 한편,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뉴욕주의 보상한도는 USD 500,000임.

자료: Yasui(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 참조.

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기금 적립과 보험료 산출

-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크게 사전적립과 사후각출로 적립방식이 대별되나, 사후각출이 가미된 목표기금제나, 사전적립이 가미된 최소기금제가 도입되고 있어 혼합형 적립방식이 추세를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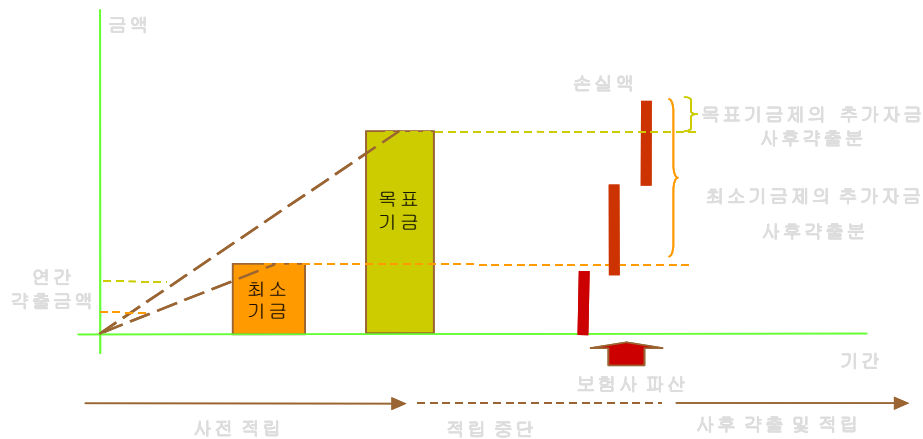
< 표 3 > OECD 회원국의 기금 운영 현황 (2001년 기준)

국가		시장규모 ¹	보호기금	적립 ²	목표기금	산출/배분기준	요율 ³
1	미국 ⁴	1	생명보험 손해보험	☐ ☐	- -	수입보험료 보유보험료	2.0% 2.0%
2	영국	3	통합기금 생명 손해	☐ ☐	- -	수입보험료 보유보험료	1.0% 0.8%
3	아일랜드	17	손해보험	☐	-	수입보험료	2.0%
4	폴란드	31	생명보험	☐	-	n.a	n.a.
5	캐나다	7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 ⁵ Y ⁵	요구 자본 ⁶ 수입보험료	1.33% 0.75%
6	일본	2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 ⁷ Y ⁷	보험료와 준비금 고려 ⁸	-
7	프랑스	4	생명보험	☒	Y ⁹	책임준비금	0.05%
8	한국	8	통합기금	☒	-	보험료와 준 비금의 평균 ¹⁰	0.3%
9	노르웨이	26	손해보험 신용보험	☒ ☒	Y ¹¹ Y ¹¹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1.0%

- 주: 1. 세계 보험시장에서의 총수입보험료 규모로 본 시장점유율 순위. OECD 전체의 점유율은 92%.
 2. 기금의 적립방식: ■ 사전적립, ■ 사전적립형 사후각출, □ 사후각출
 3. 사전각출 비율 또는 사후각출 한도.
 4. 예외적으로 뉴욕주는 사전적립방식으로서 USD 2억을 적립한도로 하고 있음.
 5. 사전적립형 최소기금 설정. 생명보험은 CAD 1억, 손해보험도 특별보험료 각출. 영국의 경우도 대기자금(standing fund)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분류에서 제외.
 6. 요구자본은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험리스크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은 통상적으로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나, 이는 책임준비금에 리스크 계수가 곱해진 것이므로 책임준비금과는 다름.
 7. 목표기금은 생명보험 JPY 4,000억, 손해보험 JPY 500억.
 8. 기금목표액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각출금을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규모를 고려하여 보험사 별로 배분. 200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수보대비 0.197%, 책임준비금대비 0.012%, 손해보험은 수보대비 0.038%, 책임준비금대비 0.007%를 각출.
 9. 목표기금은 EUR 2억7천만이나, 그 중 일부는 보험사 내부유보 형태로 적립.
 10. 직전년도 수입보험료와 당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산술 평균.
 11. 원수보험에 대하여 3년간 경과보험료의 1.5%를 목표기금 규모로 설정.
 자료: Yasui(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 Swiss Re(2005). 참조.

-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의 4개국이 사전적립방식에 속하는 반면,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의 5개국은 사후각출방식에 속함.
- 그러나 사전적립기금은 목표기금제를 통해 기금 적립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이 없는 사후각출형으로 전환되고, 사후각출기금은 적기대응에 필요한 최소기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 그림 2 > 기금적립방식과 목표/최소기금형 사전 목표적립액



- 기금의 적립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나, 생명보험은 대체로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 손해보험기금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음.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일본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약 4조원(JPY4,000억)을 책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 프랑스 생명보험기금의 경우는 약 3,000억원(EUR2억7천만), 미국 뉴욕주는 약 2,000억원(USD2억) 수준임.
- 특히, 프랑스는 적립기금의 일부를 보험사 내부에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담은 덜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사후각출방식의 캐나다 생명보험기금에서도 즉시대응기금으로서 약 900억원(CAD1억)의 최소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 보험사가 보호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각출금)의 산출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당기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누적수입보험료)이 사용되고 있음
 - 수입보험료가 플로우(flow) 기준의 지급능력 척도라면 누적수입보험료인 책임준비금은 스톡(stock) 기준의 지급능력 척도이므로 산출 근거로서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사후각출방식에서는 예외 없이 수입보험료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사전적립방식에서는 손해보험에서는 대체로 수입보험료인 반면, 생명보험에서는 책임준비금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프랑스는 책임준비금을 적용하고, 일본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모두 고려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요구자본을 고려함.
 - 당기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요율은 0.8~2%를 적용하고 있으며, 누적 보험료인 책임준비금 기준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매우 낮음.
- 이러한 기금운영 사례가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계약자보호기금이 예금자보호기금 등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전적립방식은 목표기금제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임
 - 요약하면, 기금은 보험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금 기준에서 충분한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부분보장제를 적용하고 있음.
 - 기금의 자금조달 형태로는 사전적립과 사후각출이 혼합된 방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최대 3,000억원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
 - 건전성 등에 따른 보험료차등제는 보이지 않으나, 캐나다 생명보험기금에서는 산출기준으로 요구자본(required risk capital)을 적용하고 있음.

IV.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1.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가. 통합예금보험의 출현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1998년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금융권별로 설치되었던 보호기금들을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함.
- 보험권에는 1989년 보증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이 설치됨.
- 당시 보험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5천만원의 보상한도¹²⁾를 설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매년 수입보험료의 0.1%를 각출함.
-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보험기금을 포함한 금융권별 보호기금들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면서 **2000년까지 한시적 전액보장**과 함께 금융권역별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음.

< 표 4 > 기금 통합 전·후의 보장한도와 보험료 산출기준 및 요율

구 분		~1997.11	1997.11~	1998.8~	2000.8~현재
법률 근거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		예금자보호법 (통합)	
보상 한도		5,000(보험) / 2,000만원(은행등)		무제한	5,000만원
산출 기준 ¹⁾	은행, 증권 등	예금 평잔			
	보험	수입보험료		준비금	수보+준비금
보험 요율	은행	0.02%	0.03%	0.05%	0.10%
	보험	0.10%	0.15%	0.15%	0.30%
	증권	0.10%	0.15%	0.10%	0.20%

자료: 이승철(1999), p.56, 김형원 등(2005), p.54. 참조.

12) 1990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4,389천원(USD6,147, USD1 = KRW714)수준으로서 1989년 출범한 당시 보험보증기금의 보장한도 5,000만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11.4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음.

나. 미흡한 보상한도와 과도한 보험료 부담

□ 통합기금은 은행권의 예금 잔고에 상응하여 보험권의 산출기준을 책임준비금(누적수입보험료)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위험노출규모 대비 보험사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었음¹³⁾

○ 2004년 보험권의 노출위험은 금융권 전체 노출위험의 18.8%에 불과하지만 기금적립부담(보험료 비중)은 35.8%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은행권은 73.7%의 노출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부담은 52.1%에 불과함.

< 표 5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납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단위: 억원)		보험			은행	증권	기타	합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2003	예금보험료	2,580 (27.0%)	535 (5.6%)	3,115 (32.6%)	4,775 (50.0%)	312 (3.3%)	1,343 (14.1%)	9,545 (100.0%)
	위험노출 (부보)규모	97,680 (14.5%)	19,787 (2.9%)	117,467 (17.5%)	493,649 (73.4%)	15,986 (2.4%)	45,596 (6.8%)	672,698 (100.0%)
2004	예금보험료	2,832 (29.8%)	571 (6.0%)	3,403 (35.8%)	4,960 (52.1%)	336 (3.5%)	814 (8.6%)	9,513 (100.0%)
	위험노출 (부보)규모	101,333 (15.6%)	21,050 (3.2%)	122,383 (18.8%)	479,977 (73.7%)	15,727 (2.4%)	33,018 (5.1%)	651,105 (100.0%)

주: 보증보험 손실은 일반 보험권의 손실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예금보험공사(2005).

○ 보험권의 파산 확률과 파산 건당 손실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월등히 높고 크다면, 이런 역전 현상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데이터 역시 이러한 역전 현상을 뒷받침하지 않음¹⁴⁾.

13) 물론 이와 같은 금융권역간 비교는 예금보험제도가 단일기금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복수기금제였다면 위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음.

14) 일부에서는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된 데 비해 보험권은 아직 구조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나, 이는 현재 효율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아니라 현재 효율의 적정성을 전제로 향후 효율의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 오히려 과거 실적으로 본 손해지수는 보험권이 은행권의 1/3에 불과함에도 실제 부과된 보험요율은 보험권이 은행권보다 3배 더 높게 책정되어 보험권이 보험료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파산에 따른 총 발생손실을 예금보험료 수입과 대비시킬 경우, 보험권의 손해지수는 은행권을 1.0으로 할 경우 0.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요율부과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¹⁵⁾.

< 표 6 > 보험사와 은행 기금의 보험료수입과 부실지원액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손실누계(A)	보험료누계(B)	손해지수(A/B)	경험손해지수 ¹	현행요율지수
은행	460,019	24,453	18.812	1.00	1.00
보험사	91,325	17,077	5.158	0.27	3.00
생명보험	87,690	13,858	6.328	0.34	3.00
손해보험	3,635	3,219	1.129	0.06	3.00
보증보험	102,500	- ²	-	-	-

주: 1. 2004년 12월까지의 누적 보험금을 동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평가한 지수로서 은행권을 1로 함.

2. 1989년 보험보증기금에서도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보험료 수입 실적이 없음.

○ 이러한 예금보험요율의 왜곡 현상은 2004년 보험권 A생명의 보험료 (1,165억원)가 동사 자산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은행권 B은행의 보험료 (1,192억원)와 비슷해지는 상황을 초래함.

□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장 니드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제도는 위험보장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수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본래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괴리를 보임.

15) 구조조정기금(예보채상환기금)이 분리되기 이전인 2002년까지의 실적만을 반영할 경우 보험권의 상대적 손해 정도는 은행권을 1.0으로 할 경우 0.37임. 이순재(2005). 참조.

- 2001년 부분보장제도로 환원되면서 책정된 보상한도는 은행권 등의 보상한도를 이전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보험권은 이전 5,000만원 상한을 그대로 유지한 것임.
 - 따라서 현행 보상한도는 환급금 측면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¹⁶⁾, 보험금 기준에서는 부족한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기금은 모든 기준을 은행권에 맞추는 단일 기금 운영방식을 취함으로써 각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를 보임.
- 손해보험협회에 추가로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제3자배상책임기금’은 통합예금보험기금의 제도적 경직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임.
-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는 자신이 보험사를 선택하지 않은 비자발적 피해자이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보험금청구권자라는 점에서 100% 전액 보장이 요구되나,
 - 현행 기금에서는 5,000만원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추가 지급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사후각출방식의 별도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임.

다. 상환기금의 특별보험료 사후각출과 상호보조의 문제

- 2002년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기존 기금은 상환기금으로 전환되고, **2003년부터 예금보험기금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 채택됨.
- 그런데 상환기금에서 손실의 금융권별 귀속이 불분명하게 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권별 상호보조를 초래하고 있음.

¹⁶⁾ 2001년 부분보장으로의 전환에서도, 은행권 통계에 근거할 때, 보상한도는 2000만원 수준이 적정 수준이며, 5,000만원 보상한도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음. 예금보험공사(2000).

- 통합기금은 보험권 손실(9.1조)의 1.12배에 달하는 보증보험의 손실(10.3조)이 정부 또는 전체 금융권의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의 손실로 분류하여 부담을 보험권에 전가하고 있음.
 - 첫째, 보증보험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일반 보험권이 접근할 수 없는 독점사업 영역이며, 통합기금 이전의 1989년 보험기금에서도 보증보험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보증보험사도 가입대상이 아니었음.
 - 둘째, 보증보험의 파산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계약자는 전문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금융기관 등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기금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보증보험사 파산의 영향이 보험권과 큰 관계가 없음.
 - 따라서 보증보험의 손실은 보험권의 손실이 아닌 금융권 전체 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는 정반대로 기금이 특정 금융권의 손실을 전체 금융권에게 부담시킨 사례가 상환기금의 특별보험료 일률적 부과에서 나타나고 있음.
 - 기금은 2002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을 상환기금으로 일괄 이전하면서 금융권별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여야 했으나,
 - 실제로는 모든 금융권에게 일률적으로 0.1%의 동일한 특별보험료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가장 많은 손실을 낸 은행권 손실을 다른 금융권들이 상호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그러나 단일기금 방식의 현행 체제는 각 금융권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더욱 큰 문제임.

2.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가. 기금분리의 원칙 결여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기금이 통합되어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형태이며, 운영에서도 국제 추세와 괴리가 있음
 - 통합기금 형태는 아직은 예외적이고 실험단계의 기금 형태인데다¹⁷⁾, 국내 기금의 경우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도 다름.
 - 국내 예금보험기금은 여러 금융권을 통합한 형태에서 계정 간의 차입은 물론이고 통합운용도 가능한 느슨한 구분계리에 기초하고 있음.
 - EU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기금 분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통합기금에서도 기금분리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함.
 - 따라서 기금은 자산과 부채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금융권별 독립채산제의 복수기금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권역별 특성(연계성) 반영과 금융권간 분쟁 축소, 상호보조 방지와 차등여건 마련 등에서 유리함.

나. 보호 대상과 보상 한도

-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호대상이 불명확하고, 보상한도의 설정도 위험보장이라는 보험계약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함
 - 보호대상은 “예금 등” 금융상품의 청구권자로 되어 있으나,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문적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의 정의와 같이 분명하게 보호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17) 2004년 Norton은 국제예금보험기구연합(IADI) 연차회의에서 영국 보험기금을 평가하면서 아직 실험단계의 불완전한 형태이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Norton(2004).

- 국내 제도는 은행권 예금 잔고에 대응하는 환급금 기준의 보상한도 설정으로 보험상품을 저축상품의 범주에서 취급함으로써 보험금 기준의 보상과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상한도가 설정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100%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보상한도는 보험금 기준으로 설정하되, 환급금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00% 전액 보상함으로써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배상책임기금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함.

다. 기금 적립과 보험료 산출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적립목표액 부재라는 측면에서 목표기금을 수반하고 있는 국제 추세와는 차이가 있음
- 기금적립에서는 적립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양자의 특성을 모두 지닌 목표기금을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3,000억 원에서 적게는 9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두고 있음.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출기준으로 병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수입보험료가 일반적 산출기준임
- 보험요율은 산출기준, 목표기금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보험료의 경우 0.8%~2% 수준인 반면, 유일하게 책임준비금을 산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생명보험기금의 보험요율은 0.05%임.
- 한편, 일본의 경우 국내 제도와 비슷하게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활용하나, 목표기금제를 통해 연간 할당액의 사후적 배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음.

V.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독립채산제 방식의 복수기금 운영으로 전환

- 현재와 같이 예금보험제도를 단일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권별 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복수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수기금은 자원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단일기금에 비해 기금의 유동성과 관리비용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이는 금융권별 적정 목표기금제와 예금보험공사라는 단일 관리주체에 의하여 보완이 가능하고,
- 복수기금은 단일기금에서 흔히 지적되는 금융권간 상호보조, 산출기준과 요율을 둘러싼 분쟁, 해당 산업과의 연계성 미약 등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임.

< 표 7 > 단일기금과 복수기금의 비교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기금 유동성	+	-	금융기관 차등화	-	+
산업연계성 강화	-	+	시장변화 대응	-	+
상호보조 방지	-	+	경쟁 촉진	-	+
금융권 분쟁축소	-	+	관리/차입비용절감	+	-

주: 비교우위: “+”, 비교열위: “-”를 나타냄.
 자료: 김대식 등(2004), p.164를 일부 수정 (원전: Roy, 2003).

- 단일관리 주체의 복수기금 관리는 통합감독체제의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금융권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복수기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보험계약 특성을 고려한 보상한도 조정

가. GDP 대비 본 보상한도 수준

□ 현행 국내 보상한도는 OECD 회원국의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의 GDP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한국은 GDP 대비 보상비율이 약 3.32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들의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의 GDP 대비 비율 약 2.40보다 높음.

< 표 8 >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의 GDP 대비 비율

국가	환급금기준		GDP(B) ²	GDP 대비 비율 (A/B)
	자국화폐	환산치(A) ¹		
OECD	미국	USD100,000	USD 100,000	2.68
	캐나다	CAD60,000	USD 42,857	1.82
	프랑스	EUR70,000	USD 79,096	2.70
	평 균			2.40
한국	5000만원	USD 41,950	USD 12,628	3.32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2003년 기준. 단, 캐나다는 2002년 기준

나. 환급금 데이터에 의한 보상한도 수준

□ 보험사의 해약식 준비금(환급금 기준) 데이터는 전체 보험계약자의 98.7%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보험의 환급금에 상응하는 은행 예금의 보상한도 설정 논의에서도 전체 예금자의 97% 보호와 GDP 대비 비율 2.0 등을 근거로 하여 적정 보상한도로 2,000만원 수준이 제시된 바 있음¹⁸⁾.

18) 예금보험공사(2000).

○ 보험권 환급금 데이터에 기초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계약자에게 전액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고액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 보상한도 수준은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 2,000만원은 전체 보험계약자의 약 98.7%~99.2%를 보호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전체 금액의 82.8%~84.3%까지 보호함.
- 은행권의 경우 보상한도 2000만원은 예금자의 약 96.6%를 보호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전체 예금액의 24.2% 수준을 보호하는 수준임¹⁹⁾.

< 표 9 >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 구성비 비교

금액	은행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예금자(%)	금액(%)	계약자(%)	금액(%)	계약자(%)	금액(%)
~ 2000만원	96.6	24.2	98.7	84.3	99.2	82.8
~ 3000만원	2.2	9.4	0.9	7.2	0.5	6.0
~ 5000만원	0.6	5.7	0.2	3.6	0.2	4.3
5000만원 ~	0.7	60.7	0.2	4.9	0.1	6.9

주: 은행은 2000년 6월말 기준, 보험권은 FY2004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2000), 보험은 생/손보 11개 보험사의 FY2004 통계에 기초.

○ 한편, OECD 보험계약자보호기금들의 보상한도를 해당국 국민소득수준으로 비교한 GDP 대비 보상한도 비율을 이용하여 국내에 적용할 경우 현행 5천만원보다 높은 8천4백만원~1억1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OECD 보호기금의 경우, 보험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GDP 대비 평균 5.6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보상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고한도도 정해놓은 아일랜드와 폴란드까지 포함하면 7.3배에 달함.

19) 2000년 통계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5,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음. 이는 당시 전체 예금자의 99.4%, 금액기준으로는 2000만원의 금액보장 수준인 24.2%보다 다소 높은 39.3%를 보호하는 수준이었음.

< 표 10 > OECD 회원국의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 비율

국가	보험금기준			GDP(B; 2003기준)	GDP 대비 부보비율(A/B)
	최고한도	비율보상	달러환산(A)		
미국	USD 300,000	-	300,000	37,368	8.03
캐나다	CAD 200,000	-	142,857	23,536	6.07
프랑스	EUR 70,000	-	79,096	29,240	2.70
평균(최고한도기준)					5.60
아일랜드	IRL 650,000	65%	606,175	37,639	16.10
폴란드	EUR 30,000	50%	16,949	4,894	3.46
영국	무제한	90%	-	-	-
일본	무제한	90%	-	-	-
전체평균 (비율보상 포함)					7.27

다. 보상한도 개선방안: 보상한도 이원화

- 보험의 본래 목적에 맞게²⁰⁾ 사고 보험금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고, 예금에 상응하는 환급금 기준은 은행권 예금 보상한도와 유사하게 가져가는²¹⁾ 방안 (제1안)

제 1 안

1.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 **2000만원 전액 보상**
2.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 **2000만원 + 초과분의 90%** (한도: 무제한)

20)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구매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급 받을 보험금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 예금자의 예금 목적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보험사 파산시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충분한 보험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1) 복수기금 운영에 따라 보험의 환급금과 예금의 보상한도는 달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 2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도를 환급금과 보험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소액계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보험사 파산을 전후하여 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위험보장과 고액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효과적임.
- 환급금 기준 한도 조정은 도덕적 해이의 방지 제고는 물론 10%p 이상의 환급금 감소로 보험금 기준 상향에 따른 부담 증가를 상쇄하므로 현행 5,000만원 보상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추가 재무 부담은 없음.
- 이는 통합기금 안에서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라는 여건을 반영한 것이며,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영국 사례(최저보장 GBP2,000설정)와 유사.
-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사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2안)

제 2 안

1.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 90% 무제한 보상 (한도: 무제한)
2.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 90% 무제한 보상 (한도: 무제한)

- 전액보장의 최저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비율 보상하는 경우 소액계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도덕적 해이 방지에 효과가 큼.

< 표 11 > 보상한도의 설정

구 분	해약환급금	보험금	비 고
현 행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 - 도덕적 해이 방지에 미약
제1안	2000만원 한도 (전액보상)	2000만원 + 초과분× 90%	- 소액 계약자 보호 중점 - 고액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제2안	보험금(해약환급금포함)의 90%		- 전계약자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3. 최소기금 형태의 목표기금제 도입

가. 혼합형 적립방식과 사전적립 규모 설정의 국제 추세

- 세계적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적립방식은 사전적립과 사후각출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혼합적립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
- 모든 사전적립기금은 목표 수준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후각출기금에서도 시장 대응에 필요한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보험권의 경우 목표기금은 3,000억원 이하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가 적어 초기에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 적립방식 개선방안 :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

- 대형 보험사를 제외한 구조조정 실적을 기초로 추정한 규모로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는 방안 (제1안)

제 1 안	생명보험 : 5,400억 / 손해보험 : 2,424억
-------	-------------------------------

< 표 12 > 목표기금 규모 추정결과

지급불능 보험회사 수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권 전체
시나리오	2개사	5,400억	2,424억	7,824억
	3개사	8,100억	3,636억	11,736억
	4개사	10,800억	4,848억	15,648억

주: 3.6조원이 투입된 대한생명과 1.4조원이 투입된 동아생명의 구조조정 실적은 제외.

- 대형사를 제외한 구조조정 실적으로 기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건전성 감독 강화와 시장 안정, 대형사 파산에 대한 기금 대응의 한계, 보험사 건전성 분포 등을 고려한 것임.
- 대형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적립된 기금만으로 파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전반적 건전성 개선으로 대폭적인 지급불능 사태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신속한 초기 시장대응력에 맞춰지고 있음.
- 규모의 추정에는 평균적으로 2~4개의 재무 불안정 보험사가 항상 존재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구조조정 경험을 고려하였음.
- 구조조정과 재무건전성 감독의 강화로 보험시장은 안정적이어서 급격한 보험사 부실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부실사의 부실 분포는 2001년 이전까지 94.2%, 2002년 1.0%, 2003년 4.5%로서 보험시장 환경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임.

< 표 13 > 보험사 구조조정 실적

구 분	보험사			손실분포	보증보험 ³
	생명보험 ¹	손해보험 ²	계		
~ 2001년	85,653	381	86,034	94.2%	102,500
2002년	-	869	869	1.0%	-
2003년	1,714	2,386	4,100	4.5%	-
2004년	324	-	324	0.3%	-
합 계	87,691	3,636	91,327	100.0%	102,500

주: 1. 대한생명 등 15개사 구조조정 실적.

2. 대한화재 등 3개사 구조조정 실적.

3. 보증보험의 손실규모는 전체 일반 보험권 손실규모의 1.1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일반 보험권의 손실이 아니므로 기금 추정에서는 배제.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5), p. 25.

- 보험사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해약 사태를 고려하여 추정된 필요자금을 목표액으로 설정하는 방안 (제2안)

제 2 안

생명보험 : 3,856억 / 손해보험 : 1,480억

○ 보험사의 2004년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 분포를 고려할 경우,

- 중소형 2개사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최대 목표기금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의 최대 목표기금은 약 1,480억원임.
- 4개사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의 최대 목표기금이 약 7,712억원, 손해보험의 최대 목표기금이 약 2,960억원임.

< 표 14 > 해지율에 의한 목표기금 규모 추정

시나리오		해지율 시나리오	
		MAX	MIN
생명보험	2개사이하	3,856억	2,640억
	3개사이하	5,784억	3,959억
	4개사이하	7,712억	6,364억
손해보험	2개사이하	1,480억	1,367억
	3개사이하	2,220억	2,006억
	4개사이하	2,960억	2,735억
보험권	2개사이하	5,336억	4,007억
	3개사이하	8,004억	5,965억
	4개사이하	10,672억	9,099억

주: 1. MAX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사의 해지율 반영(36.1%), MIN은 건전사 해지율반영(28.9%)

2. 해약환급금+ 보험금 기준임.

3. 중소형 보험사기준(생명보험사는 대생 제외, 손해보험사는 상위 5개사 제외).

< 표 15 > 외환위기 이후 보험시장 해지율 추이

기 간	생명보험시장 평균	비고
1999. 6	30.9%	부실사 36.1% /건전사 28.9%
1999. 9	25.0%	
1999.12	25.7%	
2000. 3	20.5%	
2001. 3	27.1%	
2002. 3	22.1%	
2003. 3	14.8%	
2004. 3	16.2%	
2005. 3	14.2%	손해보험 16.0%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제1안은 파산에 따른 투입비용 규모에 가까운 반면, 제2안은 신속한 시장대응에 필요한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추정치들 중 최소 규모가 최종 대안들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적기시정조치의 강화 환경에서²²⁾ 기금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보험사 간 상호 감시에 의한 시장규율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임.

< 표 16 > 목표기금 설정(안) 종합

2개사 기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권 전체
제1안	5,400억원	2,424억원	7,824억원
제2안	3,856억원	1,480억원	5,336억원

○ 또한 목표기금은 재무건전성 정도 등에 따라 보험사별로 차등 부과될 수 있을 것이나 세부적인 것은 추후 차등화방안에서 검토가 필요함.

-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반영은 지급여력비율이나 경영실태평가제도 등과 함께, 요구자본을 기준으로 채택한 캐나다 사례도 고려해 볼 만함.

²²⁾ 전선애(2002).

< 참 고 문 헌 >

김대식, 박영석, 신진영, 이준행, 정지만,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목표 규모와 보험요율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제2호, 2004.12.

김형원, 이재준, 이형원, 『국내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 삼성금융연구소, 2005.6.15.

이민환, 원선희, 김연경, 『주요국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2004.12.

이순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보험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7,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5.1.

이승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자료99-2,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12.

송홍선, 『초대형은행과 규율규제 논의』 CEO Report 2004-20호, 예금보험공사, 2004.11.9.

전선애, 「예금보험기금의 조달방식과 목표적립률」, 『KDIC 금융연구』 제3권제3호, 예금보험공사, 2002. 9.

전홍택, 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 금융연구』 제2권제2호, 예금보험공사, 2001.7.

정운찬, 『예금보험론』, 경제연구총서5,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2.

예금보험공사,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방안』, 세미나 자료, 2000.9.21.

_____, 『2004 연차보고서』, 2005.3.

日本 金融廳, 「生命保險契約者 保護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하여(案)」, 第二部會24-1, 2005.2.16.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 "Working Paper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Markt/2513/04-EN, 2004.10.

_____, "Working Paper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Markt/2529/05-EN, 2005.1.

_____, "Report on the Member States' replies to questionnaire (Markt/2506/02)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Annex to Markt/2517/02-EN, 2002.

Garcia G, "Deposit Insurance : A Survey of Actual and Best Practices," IMF Working Paper 99-54, April 1999.

_____, "Deposit Insurance : Actual and Good Practices," IMF Occasional Paper 197, April 2001.

Norton, J, "The Single Regulator Model and the United Kingdom - Pros, Cons and Issues with Deposit Insurance: Based on an IFLU-London Repor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Third Annual Conference, Brunner Switzerland, Oct 26-27, 2004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4: growing premiums and stronger balance sheets", *Sigma*, No. 2, 2005.

Yasui, T., "Policyholder Protection Funds: Rationale and Structure", *Policy Issues in Insurance :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e OECD Countries*, No.3, OECD, 2001.

< 질 문 지 >

성명:

소속:

질문 내용:
